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습적 부정구매·부정판매의 경우 형의 가중〉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19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습적 부정구매·부정판매의 경우 형의 가중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중오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3. 27.
3. 회 부 일: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상습적 부정구매·부정판매의 경우 형의 가중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벌칙) (생략)	제49조의2(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근 암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¹⁾,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유형화하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등을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²⁾, 이를 위

1) 법률 제21398호(본회의 의결일: 2026.1.29. / 개정: 2026.2.27. / 시행일: 2026.8.28.)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 시행일: 2026.8.28.>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또한, 전담 신고기관의 지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더하여,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발하는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을 낮추고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 불법성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체계적 측면에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398호)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정판매”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입가격 이상으로 입장권등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부정판매행위를 형벌로서 처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26.2.27. / 시행일: 2026.8.28.>

별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상습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형의 가중 여부 결정 시에도 행위의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습성은 범죄의 성립 요건 단계에서 이미 판단 요소로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동일한 판단 요소가 범죄 성립 요건 단계와 형의 가중 여부 판단 단계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법 해석상·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동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반행위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② 상습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가중하는 조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③ 상습적 부정행위는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